

“

2021년 보험연구원 운영방향

2021.1

”

목 차

I. 보험산업 현황 및 이슈 3

1. 코로나 경제와 비대면·디지털 환경
2. 고령 사회와 저성장·저금리 환경

II. 2021년 연구 목표 5

1. 경영 혁신 촉진
2. 경영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3. 사회안전망 및 실물경제 기여도 제고
4. 소비자 신뢰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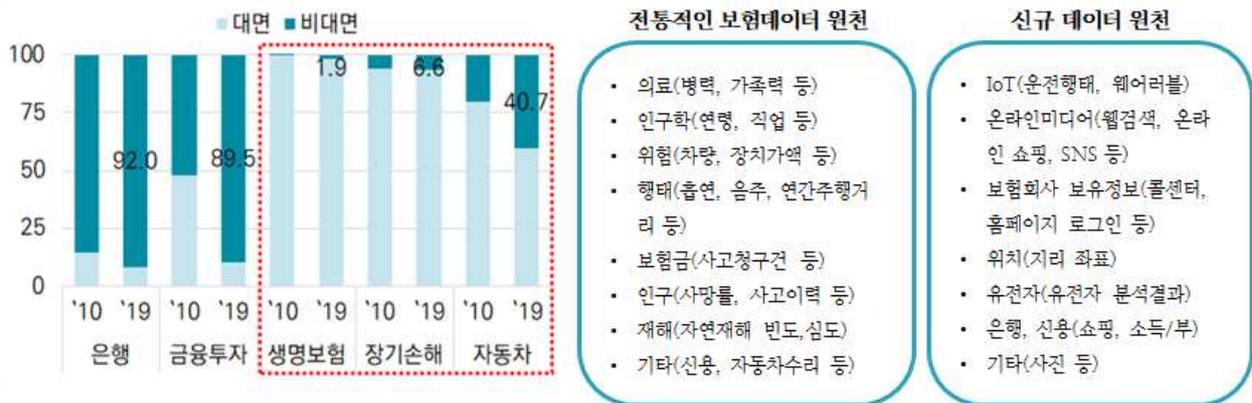
I. 보험산업 현황 및 이슈

1. 코로나 경제와 비대면·디지털 환경

■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Non face-to-face) 경제활동이 일상화되면서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이제 소비자와의 비대면 접점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도전과제가 되고 있음

- 보험권에는 비대면 환경에서 전화마케팅(TM)이나 사이버마케팅(CM) 등 비대면채널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전속 및 대리점)설계사 채널과 비대면채널의 융합이 현안으로 부상함

〈그림 1〉 보험회사의 비대면(온라인)채널 활용도(좌)와 데이터 원천(우)



주: 은행은 입출금 및 자금이체 거래 기준, 금융투자는 거래량 기준, 보험은 초회(생명) 및 원수(손해) 보험료 기준임
 자료: 김동겸·김석영·정인영(2020); 보험연구원(2020),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한편, 데이터 3법과 공공데이터 공개 등이 이루어지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품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어 기존의 상품감독 관행과 공급 형태를 벗어난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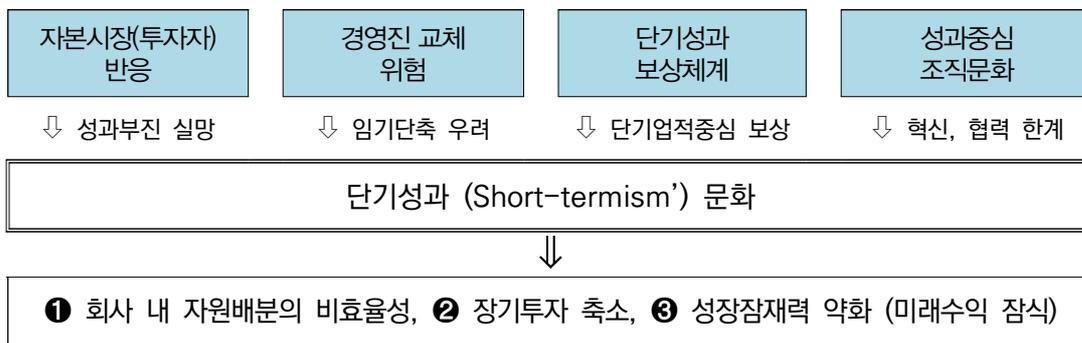
- 단기간 보장이나 갱신형이 새로운 위험 관리에 적합하며, 다양한 위험인수자의 보험시장 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업의 휴업이나 자연재난, 사이버위협 증대 등으로 손실보상 및 배상책임 니즈는 커지고 있으나, 역사적 데이터의 한계와 손실의 동시다발성 등으로 민간보험만으로는 위험인수가 어려우므로 민·관 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2. 고령 사회와 저성장·저금리 환경

-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저금리 심화로 보험산업에 대한 가치경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저성장에 따른 경쟁 심화로 상품은 더욱 복잡해지고 공격적인 상품 출시가 반복되면서 소비자 분쟁위험 노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 특히, 지속된 저금리로 축소된 이자마진을 비차익 등으로 보전하려는 외형(Volume) 경쟁과 장기채권 매각을 통한 투자수익 실현 등 단기성과주의가 우려되고 있음

〈그림 2〉 단기성과주의



자료: 김동겸·김석영·정인영(2020)

- 수십 년간의 저금리 환경에 대응하여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과 위험기준 자본규제 강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국내 보험산업에는 건전성과 사회안전망 역할 개선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상황임
 - 생명보험의 이차역마진과 손해보험의 높은 손해율이 지속되고 있는 저수익 구조는 시가 기준 자본규제(K-ICS)에 대한 산업의 수용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EU Solvency II 사례와 같은 장단기 연착륙 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부채시가평가가 자본시장에 가져올 충격(IFRS17)에 대비한 자본 확충 외에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도록 자발적이고 원활한 계약이전이 가능한 시장 인프라 구축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함
- 또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한 우리 사회의 건강·소득보장 수요에 보험산업의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
 - 건강관리수요 증대에 따른 헬스케어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규제 공백이 아직은 존재함
 - 수수료 및 자본규제 등으로 연금보험 공급이 부진한 가운데, 연금형 종신보험이 연금수요를 대신 흡수하면서 소비자보호와 장수위험관리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II. 2021년 연구 목표

■ 4대 연구 방향은 보험산업 현안 이슈에 대응하여 ① 경영 혁신 촉진, ② 경영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 ③ 사회안전망 및 실물경제 기여도 제고, ④ 소비자 신뢰 제고로 설정함

○ 디지털 경제 가속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영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도전과제 제시

○ 또한, 생산적인 보험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안전망 및 실물경제 기여를 높일 도전과제 제시

연구 방향		세부 연구 주제	
보험산업 지속가능성 제고	경영 혁신 촉진	경쟁 촉진	소액단기보험회사 진입 촉진
			디지털 보험사 진입 및 활성화
		AI 활용	디지털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비대면 환경 판매채널 개선	온·오프라인 통합채널 허용	
		온라인 보험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경영 투명성 및 건전성 강화	선제적 위험관리	K-ICS 로드맵 구체화
계약이전 인프라 구축		런오프 제도 개선 및 시장 조성	
주주경영에서 이해관계자경영으로		경영자 성과평가기준 개선 기후변화위험 감독체계 마련	
생산적인 보험생태계 조성	사회안전망 및 실물경제 기여도 제고	재난위험 보장	기업 재난위험 공·사 협력
			개인이동수단 피해자 보호
	건강 및 노후 보장	건강보험제도 공·사 보험 연계	
		초고령자 보장공백 축소 개인연금 활성화	
	실물경제 기여	국내 장기대체투자 활성화	
소비자 신뢰 제고	공정한 보험금 지급	손해사정제도 개선 보험사기 방지 강화	

1. 경영 혁신 촉진

가. 소액단기보험회사 진입 촉진

1) 검토배경

- 국내 보험시장의 구조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경쟁 보험회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인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소규모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임
 - 일본의 경우 2016년 기준 보험회사 총 수는 189개인데, 이 가운데 소액단기보험회사 수는 전체의 약 50%에 해당되는 89개임
- 최근 금융당국은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하고 최저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였는데,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함

2) 추진방안

- **(판매채널)** 소액단기보험회사의 경우 소규모 지역 상권에서 **지리적 채널 접근성**을 통해서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역별로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업체(예, 부동산 중개소, 약국 등)에서 소액단기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보험모집인에 비해 자격 요건이 완화된 **소액단기보험모집인 제도 도입 검토**
- **(인적요건)** 소액단기보험회사 허가 시 일반보험회사에 비해 완화된 인적 요건 적용
 - 일본의 경우 일반보험회사에 비해 완화된 보험계리인 요건을 소액단기보험회사에 대해 적용
- **(비례성 원칙 적용)** 소액단기보험회사에 대해 일정기간 건전성 규제 유예 또는 일반보험회사와 차별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
 - 독일의 경우 소규모 보험회사(연간보험료 수입이 500만 유로, 그리고 책임준비금 규모가 2,5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회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규제함
 - 일반보험회사는 Solvency II를 적용, 소규모 보험회사는 Solvency I을 적용함

나. 디지털 보험사 진입 및 활성화

1) 검토배경

- 향후 빅테크 등 IT기업의 보험업 진출과 함께, 보험회사와 IT기업 간 다양한 제휴·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어, 기존 보험회사들의 경우 빅테크가 가진 판매채널로서의 강점을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시도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기존 보험회사와 빅테크의 제휴만으로는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온라인 보험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인슈어테크의 보험시장 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추진방안

- 주요국의 경우 대부분의 인슈어테크가 벤처 캐피탈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시장에 진입함
 - 진입 이후에도 규모 확대(scale up)에 성공하기까지는 벤처 캐피탈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온라인 채널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인슈어테크 보험회사가 기존 보험회사와의 경쟁에서 상품 경쟁력 등 실질적인 차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벤처 캐피탈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 인슈어테크 보험회사 해외사례]

- **(성공사례)** 단순화된 약관의 보험상품을 개발한 레모네이드(Lemonade)와 운전자 행태 기반 자동차보험상품을 개발한 루트(Root)는 지속적으로 벤처투자를 받고 있음
- **(실패사례)** 마이크로 보증을 판매했던 Kinsu, Back Me Up, Trov의 경우 더 이상의 벤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해 최근 영국시장에서 철수

다. 디지털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1) 검토배경

- AI 및 빅데이터 분석(BDA)은 보험업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임
 - 활용된 데이터와 분석 결과에 대해서 알고리즘의 투명성, 결과의 공정성 여부, 의도하지 않은 영향 등에 관한 우려가 있음
- 미국과 유럽은 AI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하여 인간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윤리준칙을 제정하거나 마련 중임
 - 미국 NAIC는 「Guiding Princip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를 발표함
 - EIOPA는 “보험의 디지털 윤리 전문가 그룹”(Consultative Expert Group on Digital Ethics in Insurance, 이하 ‘GDE’)을 구성하여 기준을 마련 중임
 - 이들의 주요 관심은 솔루션의 공정성과 윤리성, 운용자의 책임부여, 분석 과정 추적 및 결과의 설명 가능성, 프라이버시 보호 및 디지털 보안 등임

2) 추진방안

- 국내 보험산업에도 빅데이터 분석과 AI 활용에 있어서 과정의 설명 가능성과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 윤리성 등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 AI 활용이 보험료 산출과 언더라이팅 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요구됨
 - 다만, 기준 마련이 보험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과 AI 적용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AI 활용으로 인해 보험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요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함

라. 온·오프라인 통합채널 허용

1) 검토배경

- 현행 보험모집 과정은 판매채널 간 연계 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¹⁾ 이는 소비자의 비대면 채널 선호에도 불구하고 낮은 비대면채널 가입으로 이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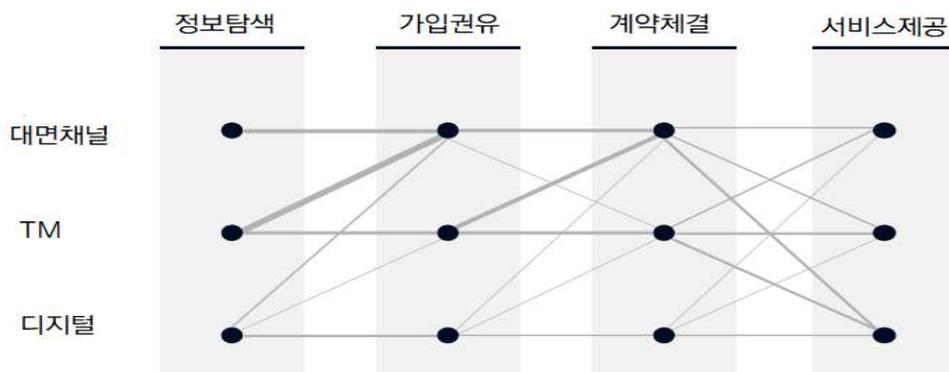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비대면채널 상품 비중은 2020년 6월 기준 각각 1.1%, 13.9%임

2) 추진방안

- 소비자행태 변화,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해외에서는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등 여러 경로를 거치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옴니채널(Omni-channel) 도입 방안이 논의 중임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되면서 금융회사들도 디지털 중심으로 영업 전략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그림 3〉 옴니채널을 통한 보험가입 과정



- 계약체결 단계별로 소비자가 가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융합채널(Omni-Channel) 검토

○ 보험가입과정을 세분화 한 후 각 단계별 준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보험모집 과정을 ① 정보탐색, ② 모집인과의 접촉 및 가입권유·상품설명, ③ 계약체결, ④ 보험서비스 제공 등으로 분류하고, 각 과정에 필요한 요건 및 이행사항을 규정할 필요

○ 상품·판매채널별로 사업비율을 달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가능한데, 채널 간 연계를 통한 보험가입 시 사전에 책정된 사업비 배분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됨

1) 금융위 유권해석 회신문(170259)

2. 경영 투명성 및 건전성 강화

가. K-ICS 로드맵 구체화

1) 검토배경

- **(제도 안정성)** K-ICS로드맵을 통해 시행시기, 정량평가와 관련한 기본적인 제도 안정성은 확보되었으나, 도입 이후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는 불확실한 상황
 - 2023년 K-ICS 도입과 관련한 최근의 평가는 상당수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유지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후 위기상황에 대한 감독당국의 대응전략은 로드맵에 보이지 않음

2) 추진방안

- **(선제적 위험관리)** K-ICS 도입 전후의 안정화 조치와 더불어 장기적인 제도 연착륙 계획을 제시하여 보험회사의 선제적인 위험관리를 유도할 필요
 - K-ICS 도입과 함께 RBC **병행 시행**으로 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 K-ICS 도입 이후의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
- **(감독회계 및 계리제도)** K-ICS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감독회계 및 계리제도를 정비할 필요

[참고: EU 사례]

- EU 감독당국은 Solvency II의 **시장수용성과 경기순응성**을 고려하여 Solvency II 로드맵을 수정함
 - EIOPA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향평가를 토대로 **보완조치**를 도입한 이후 Solvency II를 2016년부터 시행함
 - Solvency II 보완조치는 **제도 도입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급격한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고, **제도 도입 이후 과도한 변동성 발생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둠
 - 보험부채 할인을 조정, 무위험이자율 적용 및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에 대한 16년 경과조치, 재무건전성 회복기간 연장 조치 등이 마련됨

나. 런오프(Run-off) 제도 개선 및 시장 조성

1) 검토배경

- 초저금리 시대의 도래, K-ICS 도입 등 규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업재조정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사업 철수 분야의 경우 잔존 계약(Run-off)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음
- 특정 사업 분야의 런오프 계약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계약이전'이 있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 이와 관련된 법제도와 시장 기반이 미흡한 편임
 - 현행 보험업법에는 임의 계약이전 시 포괄이전만 허용하고, 전문 런오프회사가 존재하지 않음

[참고: 임의 계약이전 관련 보험업법 조항]

- (제140조 1항)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의 산출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 (제141조 3항) 계약이전에 이의를 제기한 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한다

2) 추진방안

-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임의 계약이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전문 런오프 회사 육성 등 시장 기반을 조성함
 - 독일의 경우, 계약이전 시 포괄이전 제약이 없으며 감독당국이 승인하면 보험계약자의 개별동의 없이도 계약이전이 가능함
 - 또한 생명보험 관련 런오프 전문 보험회사가 다수 존재함

다. 경영자 성과평가기준 개선

1) 검토배경

- 최근 보험산업의 경영자 보수체제는 기본급과 단기성과에 치우쳐져 있어서 보험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계약 유지와 그에 따른 가치경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그림 4〉 한국과 미국의 보험회사 임원 보상체계 비교



주: 한국은 2013~2018년, 미국은 2008~2018년의 보험회사 경영자 보상 데이터를 참조
 자료: 보험회사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ExecuComp Database

2) 추진방안

- **(보수구조 및 공시)** 보험회사들의 총보수 대비 성과급 비율, 특히 **장기성과 관련 성과급** 비중과 성과급에서 주식기반 보상을 높이고, 보수 공시를 세분함은 물론 경영자 보상정책의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공시에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
 - **(장기성과)** 미국의 보험회사 경영자 보상체제는 총 보수의 70% 이상이 중장기 실적달성을 위한 주식기반(스톡옵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등) 성과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부공시)** 현금, 주식, 주식 연계상품, 기타로만 구분하는 국내 공시와 다르게 해외에서는 단기성과, 장기성과(주식, 스톡옵션, 기타 인센티브), 이연보수 등으로 세분하여 공시
 - 성과급 관련 핵심 성과지표 (KPI) 채택 이유, 성과급 지급에 실제 활용된 KPI 공시
- **(주주 투표)** 경영자 보수에 대한 주주의 감시 및 통제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은 경영자 보수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 주주의 투표(Binding Vote)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비구속적 주주 권고 투표(Say-on-Pay)를 허용

[참고: 일본의 경영자 보상 공시제도 개정]

- 2019년 1월 일본 정부는 임원 보상공시의 강화를 위해 기업 내용 등의 공개에 대한 내각 부령의 개정을 공포하고 2019년 3월 31일 이후 결산하는 모든 상장기업의 유가증권 보고서에 적용되도록 하였음
 - 일본은 국제적 정합성에 입각하여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경영의 투명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경영자 보상에 대한 공시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를 개정하였음

- 경영자보상의 공시 강화를 위한 일본의 내각부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존의 법안은 회사가 보수액과 산정에 대해 현재 정책과 방법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그 취지만을 공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은 보수의 결정정책에 대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하였음
 - 1) 회사의 임원보수 금액 또는 그 산정 방법의 결정방침에 대한 현재의 정책내용
 - 2) 임원 개개인의 직책별 보수 결정방침
 - 3) 보수정책의 결정권한을 가진 자의 성명 또는 직위와 권한에 대한 재량의 범위
 - 4)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의 개요
 - 보상의 산정절차의 공개에 대한 내용의 공시가 강화되어 보수가 1억 엔 이상의 개별 임원의 성과보수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시가 의무화되었음
 - 1) 성과연동 보수와 기본보수의 결정방침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정책의 내용
 - 2) 해당업적 연동보상에 관한 지표와 해당지표를 선택한 이유
 - 3) 해당 업적연동 보수액의 결정방법
 - 4) 최근 사업연도에 해당 업적 연동보상에 관한 지표의 목표실적
 - 또한 동 개정은 임원의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당해 결의의 날짜와 내용, 결의에 관여한 임원의 숫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임원보수의 결정과정에서 보상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였음

라. 기후변화위험 감독체계 마련

1) 검토배경

- 빈발하는 자연재해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유행, 그리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협정 복귀 선언을 계기로 금융을 통한 기후위기 관리방안도 주목받고 있음
 - G20 재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기후관련 금융공시 작업반(TCFD)을 구성하였고 금융회사의 기후변화 공시체계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2017년 발간함
- 우리 정부도 지난 7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키고 친환경·저탄소에 기반한 그린경제 전환과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함

2) 추진방안

- 기후변화위험이 금융부문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후변화위험에 대한 위기상황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모니터링 체계의 수립할 필요
 - 보험회사 경영활동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반영 정도를 시장에 공시하도록 제도화
 - 보험산업의 인프라 투자와 정부의 SOC 투자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녹색 인프라를 구축

[참고: EU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Action Plan)]

- EU는 2016년 말, 지속가능 금융 고위급 전문가 그룹을 지정하고 EU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포괄적 비전을 담아 2018년 1월 31일 최종 권고안을 발간
 - 장기자금공급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금융의 역할을 신장
 - ESG 요소를 투자 의사결정에 통합시켜 금융안정성을 강화
- EU는 고위급 전문가 그룹의 권고안에 기반하여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3가지 실행목표를 제시함
 - (1) 지속가능하고 포용 성장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 투자를 유도, (2) 기후변화, 자원고갈, 환경파괴 및 사회적 이슈로 인한 금융위험관리, (3) 금융 및 경제 활동의 투명성과 장기성 촉진

3. 사회안전망 및 실물경제 기여도 제고

가. 기업 재난위험 공·사 협력

1) 검토 배경

- 자연재난, 감염병, 사이버위협 등 대형재난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소기업은 재물손해와 그로 인한 영업중단 손해는 물론 재물손해를 동반하지 않은 기업휴지손해에 노출됨
 - 약 381만 개(2018년 기준) 중소기업 가운데, 재산종합보험 기업휴지담보 계약건수는 8,613건(2019년 기준, 중소형사 5,228개)에 불과함

2) 추진방안

- 재물담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기업휴지담보(BI), 재물손해를 수반하지 않는 기업휴지담보(NDBI)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보장공백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높은 위험노출에도 불구하고, 영세성 및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중소기업 재난 위험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가 개입하는 민·관 협력을 모색할 필요
 - ① 보험회사와 위험보유, ② 가치사슬 개입방식, ③ 보험료 보조방식, ④ 보험가입 의무화 방식의 협력 형태 가운데 국내 상황에 적합한 모형을 검토할 필요

〈표 1〉 판데믹 대응 주요국의 보험프로그램 제안

구분	담보; 부보위험 및 트리거; 대상	정부개입
EIOPA(유럽)	BI(파라메트릭); 판데믹	재보험
CATEX(프랑스)	BI(정액형); 사이버, 테러, 판데믹; 중소기업	재보험
GDV(독일)	BI; 판데믹과 에피데믹; 제한없음	재재보험, 보증
ReStart(Lloyd's)	BI; Covid-19; 중소기업	없음
Recover Re (Lloyd's)	NDBI; 판데믹 등; 제한없음	보증
Black Swan Re (Lloyd's)	NDBI; 시스템 위험; 제한없음	보증
Pandemic Risk Insurance Act (미국)	BI와 행사취소; 판데믹과 전염성 질환	일정수준 초과손해
Business Continuity Protection Program (APCIA, NAMIC- 미국)	BI(최대 3개월 운영비용의 80%); 판데믹	보험금 지급
Pandemic Business Interruption Program (Chubb - 미국)	BI(정액형); 판데믹; 중소, 중견기업	공동보험(중소기업), 재보험(중견기업)

나. 개인이동수단 피해자 보호

1) 검토배경

- **(개인이동수단 확대)** 전기자동차, 전동킥 등 개인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을 이용한 공유 사업, 개인의 PM 소유 및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카카오 T바이크(카카오모빌리티), 일레클(나인투원), 고고씽(매스아시아)등 전기자전거 등 PM을 활용한 공유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음
 - 개인의 경우에도 출퇴근 및 이동 등에 고성능의 전동킥 등 PM을 이용하는 현상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사고위험 증대)**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PM을 운전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한정되고 있음
 -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운전자 범위가 만13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됨
 - 2020년 10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전통킥보드 등의 사고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자동차보험이 없는 일반인은 법원 소송 등을 통한 자구노력 이외의 피해자 보호 수단이 없음

2) 추진방안

- **(자동차보험 개선 또는 PM전용 상품 개발)** PM도 일반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수준으로 자동차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상품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PM은 기존 이륜자동차와 운행 행태, 사고 위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PM전용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
 - PM의 사고위험에 대한 통계정보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이른 시기에 적합한 자동차보험 상품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PM의 특성에 맞는 담보 및 약관개발, 일반손해보험의 통계 활용, 관련 데이터 집적을 통한 적정보험료 산출 등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다. 건강보험제도 공·사 보험 연계

1) 검토배경

- 실손의료보험은 공적건강보험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국민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과 합리적인 역할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한 「공·사 보험 연계법」 제정안이 발의됨
 - 공·사보험 연계 근거법령에 대해 금융위·복지부 간에 합의(2019. 9. 29)가 되었으나,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논의 없이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됨

〈표 2〉 「공·사보험 연계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합의안
소속	국무총리(또는 복지부) 소속 연계위 설치	복지부·금융위 공동 소속
실태조사	연계위 위원장(국무총리 또는 복지부차관)은 매년 공·사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 등 국민의료비 관련 실태조사 및 결과 공개	복지부차관·금융위부위원장 공동 연계위 위원장
위원회 권고	연계위는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 및 실손 손해율 산정 방법 권고	-
실손청구	의료기관은 실손 보험금 청구 편의를 위해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등이 전자적 형태를 제공하도록 협조할 의무	합의안에서 제외

2) 추진방안

- 국회 발의 법안의 내용은 실손보험만의 규율에 편중되어 있어 건강보험제도 및 비급여 의료 등에 대한 규율사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 (보완형 역할 강화) 실손의료보험이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 부여를 통해 운영되는 보완형인 만큼 시장의 효율적 기능을 통해서 역할 제고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비급여 규율 추가) 국민의료비 경감 관점에서 공·사보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비급여 규율을 위한 사항이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음

라. 초고령자 보장공백 축소

1) 검토배경

-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건강보험 등이 있으나 이후에는 보험가입이 어려운 상황임
 - 실손의료보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50세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더라도 70~80세 이후에는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게 됨
 - 유병자의 건강보장 수요에 대응하는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 보험회사는 건강보험시장 포화에 따라 초고령자와 유병자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 유인이 있지만, 상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음
 - 초고령 신규 가입자나 유병자에 대한 충분한 통계가 없어 위험률 산출이 어려움
 - 단순한 보험금 지급보다는 초고령자와 유병력자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초고령자 보장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관련 환경 조성이 미흡한 상황임

2) 추진방안

- 초고령자의 갱신 보험료 급증을 보전하기 위한 적립 기능을 포함하거나 사망보장과 건강보장을 결합하여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갱신 보험료 급증 시 적립금에서 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험금의 일부를 적립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성과 보장성이 결합된 형태의 보험상품이나,
 - 사망보장과 건강보장을 조합하여, 건강보장의 보험료가 급증할 경우 사망보장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필요
- 초고령자와 유병자 보장을 위한 위험경감 방안이 필요함
 - 통계가 부족할 경우 시험적인 위험률 산출과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가입자가 보험회사와 제휴된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에서 의료서비스나 요양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이 아니라 서비스를 보험금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검토
 - 가입자의 거주지에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직접 받도록 할 경우 보험회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마. 개인연금 활성화

1) 검토배경

-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최근 5년간(2014~2019년) 대폭(62.3%) 감소하였고 수입보험료 또한 27.3%가 감소하는 등 개인연금보험 시장은 크게 위축되고 있음
 - 모집수수료 변화와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에 따른 공급 및 판매 유인의 감소와 조세제도에 따른 수요 유인의 감소가 주된 원인임

2) 추진방안

- 장기유지를 통한 노후소득 확보와 국가의 장수위험 관리 차원에서 모집수수료와 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현행 규제는 ‘단기 해지’ 시에도 환급금을 늘려주는 데에 저축성 범주에서 연금을 규제함
- K-ICS 도입에 대응하여 연금보험의 보증부분을 안전자산에 매칭하는 등의 신규 상품의 개발을 촉진할 필요

[참고: 영국 하이브리드 연금상품]

- 유럽에서는 Solvency II 도입을 전후로 하여 연금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연금과 정기인출 상품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연금이 개발됨
 - 하이브리드 연금은 종신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정기인출의 소득 유연성 및 수익성을 결합한 상품으로 전통형 연금상품의 대안으로 부상
 - 보증형 정기인출상품(Guaranteed Drawdown Products)으로도 불리는 하이브리드 연금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정기인출 상품에 고연령에서 연금이 개시되는 종신연금(Longevity Insurance)을 결합한 형태를 예로 들 수 있음

바. 국내 장기대체투자 활성화

1) 검토배경

- 지속되는 저금리로 장기 국채, 회사채 등의 투자를 통해서도 운용자산 수익률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포트폴리오 분산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2019년 현재 보험산업 자산운용의 14%가 대체투자자산에 투자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해외자산이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등으로 장기인프라 자산이 확대된다면 보험회사의 장기투자 수요와 실물경제 기여 모두에서 바람직함

〈그림 5〉 보험회사의 장기대체투자 추이



자료: 김해식 외(2020),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 - 재무건전성」, 『CEO Report』, 보험연구원

2) 추진방안

- 보험회사의 장기대체투자 현황과 관련 규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변화하는 장기대체투자 시장에서 국내 보험회사의 과제, 정책적 지향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전세계적으로 그린뉴딜 정책이 강조되며 녹색인프라 투자처가 확대되는 등 장기대체투자 시장의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기투자자로서 보험회사의 역할과 실제 기여에는 괴리가 있음
-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국내 장기대체투자 시장에서 보험회사의 도전과제가 무엇이고, 관련한 정책과제를 도출

4. 소비자 신뢰 제고

가. 손해사정제도 개선

1) 검토배경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손해사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할 시점임
 - 특히,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을 보험회사 고유의 업무로 보지 않고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하는 시각도 있음

2) 추진방안

- 손해사정사에 대한 행위기준 마련, 손해사정 분쟁해결, 손해사정업무의 자회사 의존도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손해사정사의 과도한 영업행위, 손해사정금액에 연동된 수수료, 소규모 손해사정업체의 불투명성 및 감독소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기준 수립과 교육이 필요함
 - 둘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자회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부당한 규모성 지원거래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표준 위탁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관계법률 및 약관의 불완전성 및 불확정성에 기인한 보험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손해사정 심의기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손해사정사의 합의·절충 금지로 인해²⁾ 당사자 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워 결국 민원 및 소송이 불가피함

2)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 제1항 제6호

나. 보험사기 방지 강화

1) 검토배경

- 최근 전문 보험사기자가 일반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에 공모시키는 보험사기 유형이 증가하고 있는데, 경기침체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조사협의회³⁾나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⁴⁾ 간 실질적 협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추진방안

- (정보공유와 분석범위 확대) 보험사기 방지기술 고도화를 위해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고, 새로운 보험사기 데이터분석기법 활용을 고려하되, 분석정보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
 -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ICIS)과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이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집적·분석하고 있음
 - 보험사기 예측·적발에 도입되고 있는 데이터분석시스템으로 인한 잠재적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함⁵⁾

[참고: 영국 보험사기 대책위원회(Insurance Fraud Taskforce)]

- 영국 정부는 2015년 보험사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무부와 법무부가 대책위원회를 지원
 - 영국보험협회(ABI), 시민자문기관(Citizens Advice), 영국보험중개자협회(BIBA), 금융서비스 소비자패널, 보험사기국(IFB), 금융옴부즈만(FOS)으로 구성됨
- 대책위원회는 보험사기 현황과 원인을 조사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함
 - 26개 권고사항에는 크게 경성보험사기, 연성보험사기, 보험청약보험사기 방지대책이 제시됨

3) 금융감독위원회,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각 추천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됨. 최근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이 추가됨

4) 검찰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함

5) 이를 위해서는 최근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IC)가 채택한 보험회사의 AI 사용 관련 지침이나, EIOPA의 디지털 윤리에 대한 전문가 그룹, EU-US Insurance Dialogue Project의 빅데이터 작업반 논의를 참고할만함